

공유재산 사용허가
[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]
동의안



구 미 시

공유재산 사용허가 [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] 동의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2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구미시 소유 부지인 선기동 447-6, 448-4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함에 따라,
- 나. 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(토지)

- (1) 지번(목) : 경상북도 구미시 선기동 447-6(답), 448-4(답)
- (2) 사용면적 : 대상면적 637㎡

나. 수소충전소 구축 개요

- (1) 사업내용 :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민간자본보조사업
- (2) 사업기간 : 최초 10년, 1회 연장 10년(총 사업기간 20년)
- (3) 사 업 비 : 75억원(국비 42억, 민간 33억)
- (4) 사업규모 : 수소충전소 충전용량 120kg/hr, 디스펜서 2기
상용(버스/트럭) 6대/시간, 승용 24대/시간

다. 사용허가의 필요성

- (1) 수소충전소 구축은 친환경차량 전환 가속화로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,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2050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한 수소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
- (2) 친환경 차량 보급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

라. 추진실적

- (1) 한국자동차환경협회(환경부 역무대행) 주관 '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 특수 수소충전소 공모 선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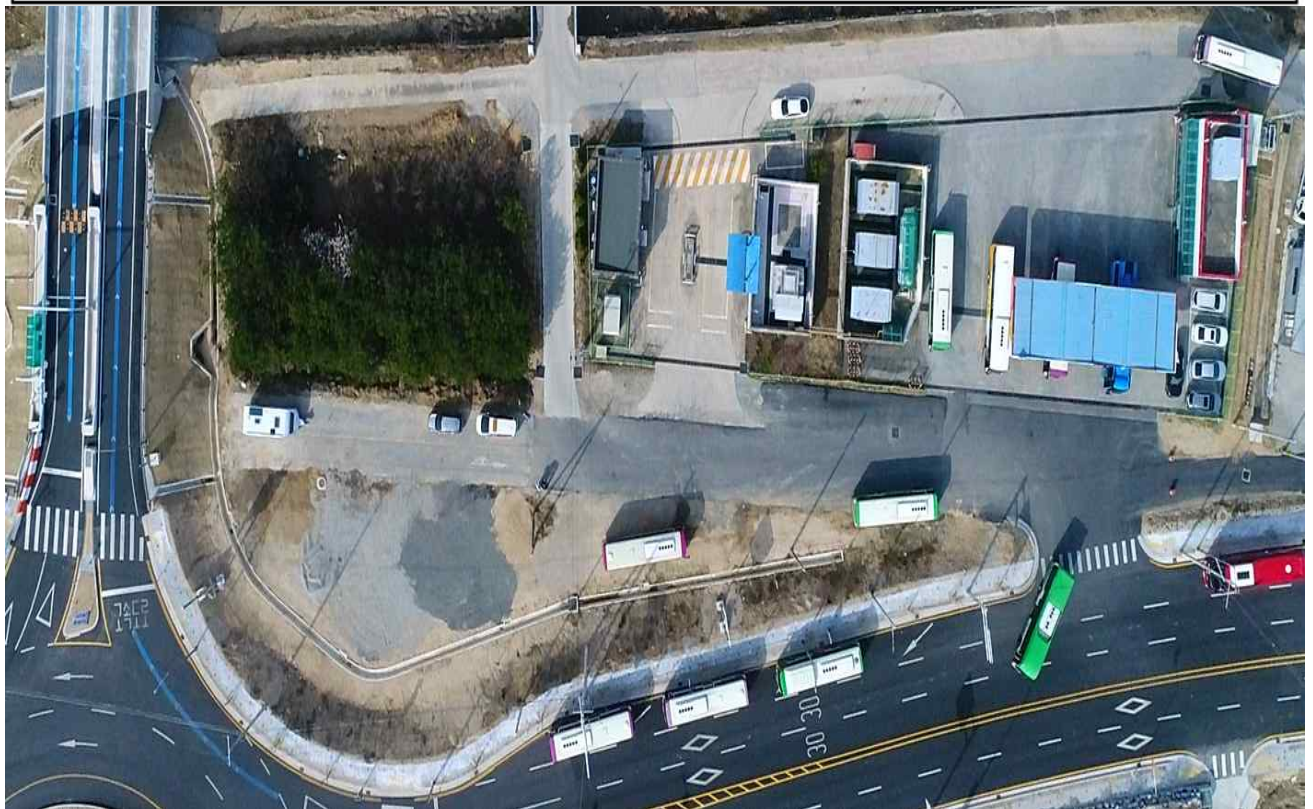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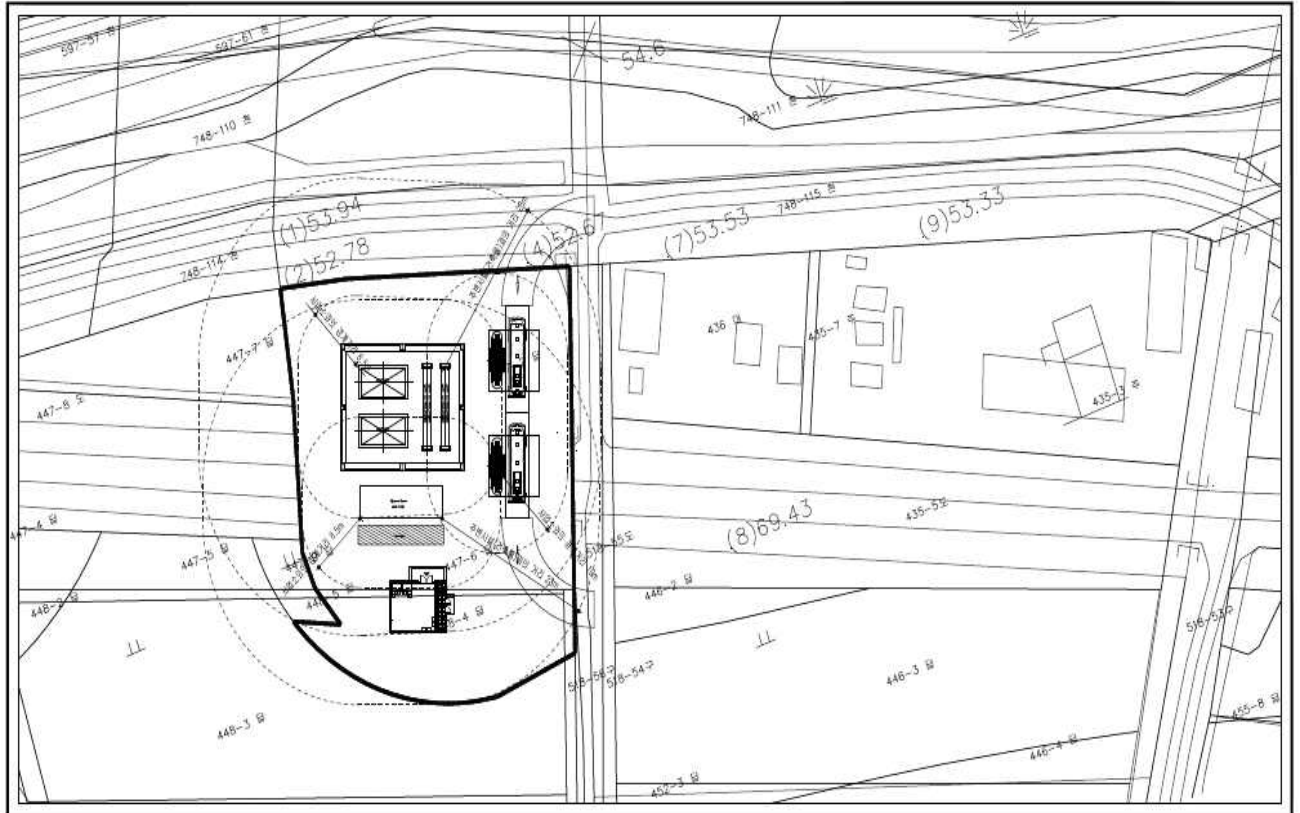
관계법령

□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11조의3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7. 27.>

□ 위치도



소 관 부 서		도로과
입 안 자	과 장	박재범
	담 당	이연경
	담 당 자	조우찬 (480-5452)